



도답도답



2019년 8월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강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2019. 7. 16. 시행 -

◆ 아청법 제8조의2 신설 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음.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은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공박(窮迫)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

◆ 아청법 제8조의2 처벌 내용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 10년 이하 징역 /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 공박한 상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신적, 육체적 곤궁을 포함(ex: 가출, 학대 등)

● 공소시효 특례 조항 추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3호) - 2019. 7. 16. 시행 -

◆ 공소시효 특례 조항 추가 이유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아청법 제20조 제3항 제3호 내용

기존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외에 제7조제5항(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을 추가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중 '방문객' 중에서 -

